

의안
번호

1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9. 06.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순임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163호

다. 제출일자 : 2023. 08. 21.

라. 회부일자 : 2023. 08. 31.

2. 제안이유

-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공감능력 향상,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침. 이에,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발굴·보급, 시설 이용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 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마.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21. ~ 2023.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 청소년¹⁾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2)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2. “문화활동”이란 「문화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3)를 말한다.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추진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구청장에게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하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북구 청소년은 10,792명이며, 25개 자치구 중 6위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제5호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방향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지원사업)**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굴·보급, 시설 이용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지원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
4. 청소년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를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의 달, 성년의 달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 향유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47조⁴⁾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⁵⁾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도록

4)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규정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다양한 사업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